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274 제출연월일: 2024. 7. 26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,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4조의5(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)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 하기 전에 피해자(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)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·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) 제29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94조의5(금전 공탁과 피해자
	등의 의견 청취) ① 법원은 피
	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
	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
	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
	자(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
	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
	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) 또는
	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
	<u>야 한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
	<u>방법·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</u>
	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
	<u>다.</u>